

한국교회와 저작권의 문제

제갈창수 (경민대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윤리적 문제로서의 저작권

1. 저작권 문제
2. 저작권과 윤리

III. 한국교회와 저작권

1. 한국 사회와 저작권
2. 한국교회의 저작권인식의 변화 모색

IV. 나오는 말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the problems of copyright in korean church. That is, I study on the aim, subject and methodology. In the beginning, moral philosophers adopted the property into copyright. And I study on the history of copyright. The computer revolution is not merely technological, it is fundamentally social and ethical. Hence we need a new understanding that takes a concrete korean christian ethical context in consideration and deals with new moral issues beyond each particular case-study. For the church has only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the copyright. And we need a new approach to the copyright that is community of character.

Key words : copyright, korean church, property, understanding, community of character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교회와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어쩌면 당연한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낯설게 여겨지는 부분인 지식 노력의 부산물인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타인의 것을 빌려다 쓰는 것이 흠이 되지 않고 장려되었던 시기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독교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법학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졌다. 권리의 문제와 재산권의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던지기 쉽지 않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몇 해 전 어느 기독교 NGO에서 이 문제를 교회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얻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교회가 다룰 수 있는 저작권의 문제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접근과 정보 공개로 얻는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사회의 부분에서 이룬 지적 저작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준다고 한다면, 크게 논할 부분이 의외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콘텐츠들은 어디까지가 순수한 창작에 의한 저작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와 관련 있는 문화콘텐츠부분과 학술콘텐츠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화콘텐츠라 함은 문학작품과 영화, 공연되고 있는 연극, 교회관련 건축물, 성화, 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조각 작품, 사진, 예배와 그 밖에 실연되고 있는 음악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물론 이 문화콘텐츠는 디지털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학술콘텐츠라 함은 교회에서 생산된 신학적 담론 및 강연 녹취

록, 설교등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주제는 한국교회에서 생산되는 문화콘텐츠와 학술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과 그 인식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논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될 것이다. 우선 저작권 개념과 왜 저작권이 윤리적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한국사회, 특히 한국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을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사회윤리적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윤리적 문제로서의 저작권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현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자를 보호하는 권리가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다.¹⁾ 저작권에 대한 보호문제는 21세기의 커다란 화두이다. 저작권(copyright)에 대해 합의된 개념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가리키며 이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²⁾ 저작 재산권은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

1)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1992, 21.

2) 김기태, 『매스미디어와 저작권』, 이채, 2005, 10. 이창후, 「디지털 저작재산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고찰과 대안모색」, 『철학사상』,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7, 128.에서 재인용. 정보윤리에 대해 연구한 추병완은 다음과 저작권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 넓은 뜻으로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자의 권리 일반을 말하고, 저작자 인격권을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저작 재산권을 말한다. 저작권은 무체재산권

하고 허락의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일곱 가지³⁾가 있다.⁴⁾ 이것은 일반적인 물권(物權)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⁵⁾ 달리 말해 저작권 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이용권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남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정신적 출생자인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의 이름을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성명표시권), 혹은 자신의 저작물에 변경을 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동일성 유지권)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⁶⁾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 저작권은 창작된 저작물과 저작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한 이 또한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

(無體財產權)의 일종으로 연혁적으로는 재산적 측면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그 인격적 측면도 중시한다. 저작 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권이며, 저작물을 이용·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한다. 공공적 견지에서 타인의 이용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인정된다. 저작권의 내용인 복제·번역·편집·개작·홍행 등의 각 부분적 권능을 각각 분리하여 양도 및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추병완, 『정보윤리교육론』, 울력, 2001, 127.)

3) 이창후, 같은 글, 129.

4) 김기태, 같은 책, 13.

5) 앞의 책, 같은 곳.

6)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3, 3.

인접권이라 한다.)⁷⁾

저작자에 대해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 활동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활동을 촉구하고 경제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의 정의에는 저작권의 변화 추세를 반영한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그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보호방안이라고 인식했던 추세가 점차 지적 노력을 기울인 창작행위의 대가를 금전으로 파악하여 저작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창작성에 대한 보호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작자의 에 대해저작자는 이것을 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받아 임의로 처리할 수 있고,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하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도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창작 활동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이용되고 그에 따른 가치 창출로 말미암아 사회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선정하고 일정기간 공공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창작된 저작물이 아무리 창작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혼자서 다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앞 선 세대가 쌓아놓은 성과를 기반으로 그 위에 자신의 창의성과 노력을 첨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과물은 독과점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널리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권리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우리가 다루려는 저작권은 문화와 직결된다. 이런 저작권은 문화와 직

7) 문화체육부, 『생활속의 저작권』, 1996. 34.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 50년사』, 2007, 16에서 재인용.

결된다. 그러다보니 권리와 관련해 논의할 때, 저작권이란 것이 보편적인 자연권인가, 아니면 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공익을 위한 성문의 권리인가라는 물음에 귀착된다. 이것은 철학적 물음일 뿐 아니라 윤리학의 고민이기도 하다. 우리가 윤리학의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권리에 대한 논의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물음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진화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⁸⁾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은 그간에도 있어 왔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저작권 교과서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이 부분 논쟁은 매우 도식적으로 형식적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 고찰을 도외시 한 평면적인 원리논쟁에 그쳤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문제가 오늘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본 뒤, 3장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적권 문제는 한국의 현실과 어떤 역사적, 윤리적 배경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저작권 문제

오늘날 저작권에 관한 규범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 저작권이라는 제도가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식된 제도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서구의 대부분 나라에서도 저작권 제도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탄생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재산권으로 저작권이 자리 잡기까지 기존의 질서와 마찰이 잦았다. 서구에 의해 강제로 이식된 것이건 서서히 충돌과 마찰을 거듭하면서 제도화된 것이든 역사와 무관하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병일은 2005년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저작권법의 통제권에 대해 “이것은 저작권에 의해 강화되는 문화적 통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왜

8)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제26호, 245.

2005년 한국에서 ‘저작권’이 문제가 되었을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사실 세계무역질서 또는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벌여 나가면서 마치 ‘저작권’이 절대반지처럼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저작권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의 저작권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한 사회의 문화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되어간다는 것이다. 이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전 저작권법은 상업적인 목적의 불법복제만을 주로 규제하였지만, 이제 이 법을 강화시키면서 일반 시민의 문화적 소통행위조차 규제하려 한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논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새로운 정의(定義)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준다. 달리 말해 저작권의 문제는 새로운 국제 무역환경과 디지털 환경이라는 장이 마련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면서 그 이전 까지 도덕적 비난에 머물렀던 표절, 무단복제, 아이디어 차용의 문제가 이제는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행위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저작권을 저작물이 특정 개인만의 창의적 노력의 산물에 따른 소유권이라고 보는가? 사회와 소통하고 정보의 누적적 산물이라고 파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뒤에 더 깊이 다루기로 하자.

2. 저작권과 윤리

저작권이란 독창적인 지적 생산물의 창작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여러 권리이지만 다른 유형의 재산권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늦게 법률적으로 보장되었다. 물론 도덕적 의미에서 저작권 개념은 동아시아보다는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면

표절은, 특별히 법률적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중세에도 표절이나 원저자를 잘못 지칭할 경우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⁹⁾

정원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적 창조물이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설정되는 유형물들과 달리 무형물이라는 점에서 권리를 설정하고 보호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형물들은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측정의 단위 혹은 구획 방법에 따라 개별화되어 거래 내지 양도될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생산물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유형의 재화는 한정되어서 사용하면 할수록 소진되지만 지적 창작물(생산물)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의 아이디어, 착상을 이용하고 확대 재생산할수록 그 가치가 증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 때 증대된 가치의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보호 장치가 등장하게 된다.

저작자에게 이러한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 영국의 앤 여왕법이다. 이 법은 저작자와 출판업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었다. 이는 출판업자들과 국왕, 교회의 절묘한 이익의 합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왕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관련 사업자들에게만 복사에 관한 통제권, 달리 말해 말 그대로 저작권(copyright)을 줌으로써 세수를 증대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취득한 사업자들은 교회와 국가가 원하지 않은 출판물을 통제하였다. 앤 여왕법이 등장하던 때의 저작권법이란 사상에 대한 검열과 통상규제의 성격이 농후하였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정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9) 정원섭, 「사이버 공간과 지적 재산권」, 『철학논구』 제30집, 200.

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현대 저작권을 옹호하고 있다. 현대 저작권은 ‘과학과 예술의 발전, 또는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자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는 것¹⁰⁾’이라는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산업화와 더불어 사회가 분화되면서 지적 재산권 전반으로 확장된다 지적 재산권을 통해 창조자는 특정 기간 동안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지적 산물을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¹¹⁾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저작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당화 논변이 제시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로크적 정당화, 재산권에 대한 노동이론(labor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헤겔의 이론 혹은 인격이론(personality theory)이다. 이 두 이론은 나름의 정당화 논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구윤리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표절의 문제는 어느 이론에 따르더라도 그릇된 행위이다. 그러나 황경식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이론들이 어느 정도까지 저작권 문제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가이다.¹²⁾ 일반적으로 지적 생산물이 더 널리 효율적으로 전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우리의 관심은 결국 저작자의 정당한 요구와 공공의 이해관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다.

저작권에 대한 윤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 개념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다. 그것은 저작자(지적 창작물의 창안자, 개발자)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집중한다. 하지만 이것은

10)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정원섭, 같은 글, 201에서 재인용.

11) 산업 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지리 정보, 영업 기밀 등이 포함되며, 문예 재산권으로는 저작권으로 구분한다.

12) 황경식, 『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열린 자유주의를 위하여』, 철학과 현실사, 2006, 552.

저작자나 성과가 갖는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들이 나머지 사회와 갖는 윤리적 의미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공공의 성격과 균형을 무너뜨렸다. 이 문제에 대해 재산권으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소유권이나 배포권 만을 다루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21세기 정보사회에 디지털화된 문화, 학술 저작을 다룰 때 이렇게만 다룬다면 그것은 온전한 견해를 성립하기 어렵다. 보다 나은 견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이런 틀과 시각에서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로 이해해서 현대 윤리 이론만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황경식이 제시하는 바처럼 전통적 입장, 자연법 이론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¹³⁾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설파했듯이 사람은 이성적 존재, 달리 말해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존재이다. 그러다보니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화 된 지식, 저작물은 종교개혁시기의 인쇄술의 발달로 출판물과는 저장과 배포에 있어서 전혀 다른 물음을 던지게 된다. 디지털화된 창작물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디지털화된 창작물은 본질상 정보라 할 수 있다. 이 정보는 검색, 관리, 수정될 수 있다. 정보는 본질상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다. 소통이 바로 정보의 목적이다. 정보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지식의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정보의 본성과 목적은 소통이다. 정보의 또 다른 특성은 역동적이고 누적적이라는 점에 있다. 정보는 인간사회의 산물로서 유체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이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상호 결합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적인 저작은 한 사람의 정신에서 순수하게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상호작용이 있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창작물은 그 선행자들의 작업을 무시할 수 없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무조건 선행자들의 작업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13) 같은 책, 553.

아니라 지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나의 문제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해 알 수 있듯이 지식 및 정보 재화는 추가 비용 없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할수록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하는 반면 저작권의 독점적 소유를 보장하면 특정 개인의 이익은 증대하겠지만 사회 전체 공공의 잉여는 줄 수밖에 없다. 달리말해 저작권과 관련된 특정 개인의 이익은 증대하겠지만 사회의 진보나 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품고 있다.

이러한 재화는 시장에 일임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 저하와 이해관심을 갖는 공공, 또는 공중에 큰 피해를 입힐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통을 통해 이룩한 정보 또는 지식을 발표하거나 공유하는 데 있어서 시장 권력에 의한 통제와 가공이 더욱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이런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자.

III. 한국교회와 저작권

1. 한국 사회와 저작권

21세기 한국 사회는 학술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표절, 중복 게재, 무단 복제 등의 문제로 인해 이전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윤리적 이슈들에 고민하기 시작했다. 1957년에 저작권법이 발효하였지만 이것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왜 동아시아국가들은 저작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묻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 산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저작권 보호 전통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전통이 미약하다. 왜냐하면 이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식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적 재산을 특정 개인의 소유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공공재산이나 사회의 재산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이해는 저작권을 개인의 소유권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주장하는 문화권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 이에 대해 스타이틀마이어(Paul Steidleier)는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먼저 사회적인 방식으로 다음에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재산권을 규정하는데 그 논변에 따르면 생계(개발)권이, 재산권의 바탕이 되는 권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¹⁴⁾ 우리의 지적 재산에 대한 이해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저작권에 대해 언제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역사적 고찰은 장소적 한계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특히 문화 사이, 문명 사이 교류가 지금에 비하여 빈도수가 현저하게 적었던 과거 역사에 있어서 그 고찰방식은 장소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소는 대체로 민족과 국가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문화권/문명권으로 묶여지기도 한다. 문화는 역사와 지역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판단의 규범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역사를 우선 둘러볼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국의 저작권의 역사와 기독교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의 저작권 역사는 사본(寫本)시대로부터 인쇄업자(출판업

14) Richard A. Spinello, 『정보기술의 윤리』(Ethical Aspects of Information of Technology), 황경식·이창후 역, 철학과 현실사, 2001, 236. 참조.

자)의 이익이 중시되는 초기 인쇄시대, 서적의 발행출판에 대해 국왕이나 봉건영주가 비호하는 특권을 인정한 출판특권시대, 이어서 출판소유권설을 취한 시대로부터 저작권의 권리로 눈을 돌리는 정신적 소유권시대, 다시 무체재산권설이나 저작인격권설이 주장된 시대를 거쳐, 현재의 저작권 제도를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저작자의 사적인 지적재산권은 중요시되지 않았다.¹⁵⁾

유럽 저작권의 발전 역사를 우리나라 저작권의 발전 역사에 접목시켜 보면, 원본을 그대로 베긴다는 것이 많은 수고를 필요로 했던 사본시대는 원저작자의 정신적 창작 노고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사본의 대상이 된 것은 거의가 고전이었기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문제시 되지 않았다.

대한제국기의 인쇄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저작권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의식이 없었음은 당연하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초기 많은 법제도가 그렇듯이, 저작권법도 외국에서 생성 발전된 제도를 강제로 이식한 법제도다. 대한민국 이전 시기에는 저작권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도 책을 만드는 출판이라는 행위가 있었고, 그에 앞서 창작 활동이 존재했다. 문제는 타인에 대한 창작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이다. 동아시아 지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공자조차도 자신의 저술 활동에 대해, '서술만 하고 새로 창작하지 않는다述而不作'는 말로 규정했다. 이 말은 유학을 기반으로 지식활동을 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들에게서도 타인 저작, 특히 시와 과거의 답안 등에 대한 무분별한 인용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출판 시장을 정부가 주도하여서 시장이 한정되었던 시기에 저작권의 본격적인

15) 사단법인 저작권정보센터, 『著作權法百年史』, 7.

개념화와 법제화는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과 미국에서 출판시장이 발달하면서 성립하였다.

조선왕조가 국제질서 속에 편입된다면,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었다. 서양과 일본의 접근에 대해 조선왕조는 패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즉위한 후 섭정을 통해 서양에 대해 개항하는 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대원군이 실각하고 왕비 민씨를 중심으로 한 일가가 집권하면서 외국과의 분쟁을 피하려고 문호개방을 추진했다. 특히 일본이 조선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적극시도하자 이에 부응하려 했다.¹⁶⁾

조선은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상업출판이 보다 가속화되면서 저작권 문제는 근대적 법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조선의 상황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조선의 법 구조에서는 이것이 일본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수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1869년 5월 13일 ‘출판조례’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출판조례는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다. 일본의 저작권 법규는 1887년 12월 28일 공포된 ‘판권조례’(칙령 제77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판권면허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판권등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적에 ‘판권소유’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였다. 1893년 4월 13일에 ‘판권법’(법률 제16호)과 또한 같은 날 ‘출판법’(법률 제15호)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1934년 약간의 개정이 있었지만 1945년까지 계속된 법이었다.

일본의 저작권법이 중요한 것은 이 법들이 조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일본법들의 토대와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저작권법은 형성

16) 강만길, 『한국근대사』, 1984, 183.

되었다. 더구나 이 법들의 기초적인 개념과 형태가 1945년 해방이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1899년 4월 18일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고, 그 직전인 3월 4일 52조로 이루어진 일본 저작권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기본 틀은 1970년까지 유지되었다. 대한 제국기에 소개된 저작권 개념은 일본 저작권법에 기초하였다.¹⁷⁾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日米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저작권법령의 기반이 되었다. 이것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내각고시 제4호로 저작권령을 반포하고 1908년 8월 16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후 1909년 2월 23일 법률 제6호로 출판법이 제정되고 5월 1일자 관보에서 출판법이 발효되었다.

1910년 이후 일제의 강점하에서는 일본법이 조선에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의 저작권령은 폐지되었다. 일제는 민족적 색채를 지니고 있는 출판물을 폐간 또는 압수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 제1조에 의해 일본의 저작권법이 계속 시행되었다. 일제의 출판법은 저작자와 발행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출판허가제를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그렇다보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낮을 수 밖에 없었다.

1957년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된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이것은 1877년 일본의 저작권법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이항녕 같은 이는 저작권법이 지니는

17) 저작권위원회, 앞의 책, 59~61.

보편적인 의미로 인해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기 하였다.

그 후 198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기까지 1957년 법체제는 유지되었다. 이 개정은 1986년 한미 지적소유권 협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후 국제 조약에 가입하고 저작권법의 재정비하기 시작하여 WTO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발맞추어서 1994년, 1995년 개정을 하였고, 1996년 8월 21일에 베른협약에 가입하게 된다.

디지털화된 저작 환경에 따라 2000년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2003년 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4년 개정안에서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2005년 1월 16일 2004년 개정안 시행되면서,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 강화가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저작권이 일반인들의 생활 속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이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성과 인식보다는 저작권의 행사를 망설이게 하는 경제적 현실론을 극복하고, 저작권 침해를 적발하고,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여긴다. 이에 비해 저작권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저작권 강화는 결국 소통과 정보의 누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에 대한 통제라는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의 저작권 인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와 저작권의 관계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것들을 제안해보자.

2. 한국교회의 저작권인식의 변화 모색

“내가 처음 저작권 문제를 접한 건 1990년대 중반 대학생 시절, 한 교수님

을 통해서였다. 수업 도중에 그분은 유학 시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악보를 복사하려 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노부인이 그것은 범죄 행위라며 크게 비난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시절 선교단체에 있던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엄청난 양의 악보들을 복사하여 사용하곤 했었는데, 그 얘길 듣고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무개념’이었던 내가 부끄럽기도 했다.”(김용주, “저작권, 카피레프트, 그리고 네티즌” 가운데)

지난 2007년 5월 서울의 한 기독교 NGO에서는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토론회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들은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교회에서의 음악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 권리에 대한 것들이었다. 물론 주제발제를 통해 한국교회와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황병구가 발표한 ‘크리스천문화생태계와 크리스천음악저작권이라는 글에서 밝혔듯이 한국교회 내에서 인식되고 있고 논의 되어야 하는 저작권 문제는 특정한 개인의 권리만을 보호하자는 계몽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몸 안에 건강한 문화 형성의 차원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문화적 창작물들, 공연, 연주, 실연 등이 있다. 저작권과 전송권 등과 카피레프트(디지털 환경 속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충돌하는 현상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지적 창작물은 다른 것들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생산되는 지적 창작물은 교회공간과 공동체의 축적된 공동의 체험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동시에 교회공동체의 존재 없이는 그 의미를 잃는 독특한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교회 내에서 생산되는 문화 창작물은 누구에게 독점되거나 상품화되기보다는 공공재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구 문명의 또 다른 한 축인 기독교적 전통에서도 고대 그리스 사회가 이해했던 지식에 대한 생각, 달리 말해 지식은 소유나 거래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신의 계시나 선물이라 여기는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지식에 대한 인간의 역할은 단지 전달자에 그친다고 보았던 것이다. 오히려 필경사들은 그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학문을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전수하거나 전수 받는 것을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였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고 이것을 그의 민족에게 전달하였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각 지파 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인간의 이기심과 경제활동의 결과 토지를 많이 가진 자와 다 팔아버리고 종이 되는 자가 발생하게 되자 매 50년 마다 회년을 선포하여 본래 자기의 터전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 토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영구적인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한시 적인 이용권에 유사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당시 재산권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지식에 대해서는 더욱 독점적 소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신약성서에 의하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어라”(마태복음10장8절)라는 구절을 통해 지식을 소유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를 찾기도 한다. 한 편, 예수는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나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구약성서를 인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일한 권위의 상징이었던 성서(구약성서)에서 그 논거를 가져오거나, 논쟁을 시작하는 근거로 삼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현대적 의미의 인용의 목적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유럽사회를 지배할 당시 지식은 신에게 속하는 것이고 신에게 속한 지식은 당연히 사유(私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야 했다. 이런 지식을 사교판다는 것은 성물매매죄(sin of simony)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기독교의 저술활동은 주로 수도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문연구라는 것 또한 대개의 경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저술과 학문연구의 결과물이 그러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 속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교회 밖의 저술활동의 대부분은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책을 낼 때는 헌사(dedicatory prefaces)를 바치는 것으로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Martin Luther)는 저서, Warning to Printers에서 신약성서를 인용하여 설교하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보상을 원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초대 교회의 선교사역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것 가운데 하나가 문헌선교이다. 1908년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 인쇄물에는 판권 또는 저작권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저작권에 대해 이미 교육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보다 소통을 중시하였던 선교사들의 선택을 알 수 있다. 이것에서 우리는 저작물 문제를 단순히 도덕성 회복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적 창작을 하는 이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만을 강하게 주장하여 인접권자들의 고소, 고발, 단속이 강화된다면, 한국교회의 재정구조상 기독교문화 생태계는 붕괴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일반 상품처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듯이 기독교의 문화 창작물을 유통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소통과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자나 인접권

자 모두 일상 속의 동반자로 존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중세까지 교회는 저작권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보이지 않았다. 산업사회가 된 이후 교회는 이 문제를 개인의 소유권과 같은 차원에서 보고 해결하고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행정, 예배, 교육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불법복제품인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있다하더라도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법복제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직접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에서 저작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복제해서 사용하는 습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값이 비싼 정품을 구입하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재정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끄럽다. 교회가 앞장서서 저작권에 대해 정직하게 행하고, 저작권자들의 창작 욕구를 도와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품 사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모습은 계속 될 것이다. 교회라는 특수한 현실에 맞는 가격 책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의 소프트웨어 복제, 표절의 문제는 교회로 하여금 ‘도덕성’이라는 회두에 참여하게

하였다. 교회가 이 화두에 참여하려면, 2007년 교회신뢰네트워크 주최로 토론회에서 김동현(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사무국장)이 제안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교회에서의 저작권의 문제는 교회문화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관리 의지 부족, 이용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 비용 조달의 어려움, 권리처리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성립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저작권자의 참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공동 노력(교회별, 이용단위별 저작권 포괄계약 처리, 저작물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의), 저작물 이용자의 의식변화(불법 저작물의 접근, 이용 중지, 무료 이용의 인식 개선)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어떤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에 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작권의 문제가 정말 특정한 개인의 소유와 관련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담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야만 저작권의 이용과 침해에 대한 다음 단계의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내의 불법복제와 타인의 설교도용, 표절 등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우어 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공공의 문제에 대해 상상적 대안을 줄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리처드 니버(H.R. Niebuhr)가 말한 것처럼,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나오는 말

한국 사회는 WTO와 FTA라는 무역환경에 따라서 ‘저작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의 자유와 소통, 그리고 재산과 소비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연일 홍보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창작물은 과연 개인의 소유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공공재인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교육, 행정 등에서 교회내의 창작물과 일반 사회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일어난다.

이런 물음에 보다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새로운 인쇄, 또는 창작 환경 속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구분하며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더 다양한 저작권에 대한 담론들이 교회 내에서 기독교학계 내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기태, 『매스미디어와 저작권』, 이채, 2005
-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제26호.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 50년사』, 2007.
- 문화체육부, 『생활속의 저작권』, 1996.
-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3
- 이창후, 「디지털 저작재산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고찰과 대안모색」, 『철학사상』,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7
- 정원섭, 「사이버 공간과 지적 재산권」, 『철학논구』 제30집.
- 추병완, 『정보윤리교육론』, 울력, 2001.
- 한승현,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1992.
- 황경식, 『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열린 자유주의를 위하여』, 철학과 현실사, 2006.
- Richard A. Spinello, 『정보기술의 윤리』 (Ethical Aspects of Information of
Technology), 황경식·이창후 역, 철학과 현실사, 2001.
- 교회신뢰네트워크,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 자료집, (사)기독교윤
리실천운동, 2007.

논문투고일 : 2010. 10. 29

심사개시일 : 2010. 11. 16

게재확정일 : 2010. 12. 09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저작권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첫 부분에서, 도덕철학자들이 저작권문제를 재산권 문제로 다루는 경우를 다루었다. 그리고 저작권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컴퓨터 혁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저작권 문제를 한국 기독교 윤리적 상황에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성품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저작권, 한국교회, 재산권, 이해, 성품의 공동체
